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4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원주영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과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과 안전용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입니다.

- 최근 유괴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안전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5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이정애 의원 등 9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이민원의 양상과 범위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악의적 민원, 민원 현장 방해 및 물리적 위협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직원의 보호와 대응체계를 확대·강화하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 응대 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변 보호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범위 재규정(안 제2조제1호)
: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 포함
- 특이민원 범위 확대 규정(안 제2조제3호)
- 정보통신망(이메일·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방·협박, 명예훼손, 반복적·악의적 민원, 허위 신고 등을 포함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현실화(안 제7조제1항)
 - ARS 음성 안내 세부내용 변경
 - 전화 면담 등에 대한 권장시간 및 폭언·반복 유사 민원 등에 대한 종결 기준 설정
- 민원현장 퇴거 조치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제5항)
 - 조치 대상 행위의 범위, 절차, 유관기관 협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개정조례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민원, 반복적 허위민원 등 특이민원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민원의 범위를 스토킹, 온라인 비방·협박, 허위·과장 민원 등으로 확대하고, 민원실 내 폭력·소란 행위에 대한 퇴거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계별 조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기록장비 구축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남양주시 직원 보호 강화와 민원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6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한근수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이 각종 시정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사항에 읍·면·동 회의 참석 실비 추가(안 제3조)
- 부재하는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보험가입 관련 규정 신설 및 (안 제5조)
- 포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시정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새마을회는 읍·면·동 단위 각종 회의와 시정 협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타 단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과 유공자 포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회의 참석 실비 지급, 보험가입,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37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김동훈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거리공연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거리공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거리공연을 시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제정안은 문화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38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원주영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진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직업 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기존의 학교 재학생 중심 진로교육 정책에서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839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김동훈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용적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와 체계를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8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며,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생일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제한 완화 (제15조제8항 개정)
 - (현행)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자 모두 시간외근무 금지
 - (개정)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만 시간외근무 금지
-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제15조제10항 신설)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 생일휴가 부여(제15조제11항 신설)
 -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 부여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에게 대한 시간외근무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고,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 부여를 통해 조직 적응 지원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세대 간 격차 완화, 공직 만족도 제고,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시대적 변화와 조직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849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관련 조문 및 일부 용어 변경(안 제9조)
- [별표]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정비(안 제9조 관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인한 법령 공백을 해소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비’ 개념을 ‘수당 및 여비’ 체계로 전환하고, 검사 개시일부터 의견서 제출일까지의 실제 검사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이 위촉기간 이후 의회에서 결산 관련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산검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검사일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업무 수행량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수당을 일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을 촉진코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운영과 예산집행의 현실화를 도모한 합리적인 안이라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의안 번호	850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	체육과
·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	체육과
·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	기반조성과
·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	수도과

나. 주요내용

(1)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호평동 33-5번지 일원(국유지)
- 사업규모: 부지면적 3,500㎡ / 연면적 1,000㎡, 휴식공간, 주차장 등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사업비	3,500	-	3,400	100	

○ 세부사업비

(단위 : 백만원)

설치시설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구조물(옹벽 등) 설치비	H=5m, L=75m	200	
실내체육시설 설치비	A=1,000㎡	2,800	
부대시설 설치비	A=600㎡	395	휴게 및 편의시설 등
철도부지 사용료	A=3,500㎡	5	국유지
설계비 등	1식	100	
계		3,50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액			
	합계	2025년	2026년	2026년 이후
계	3,500		3,500	
시비	3,500		3,500	

(2)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가) 사업개요

- 위 치: 별내동 1074번지 일원(별내 근린공원 5호)
- 사업규모: 연면적 900m² / 배드민턴장(5면), 주차장 등
- 사업기간: 2026. 1.~2026. 12.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사업비	2,300	-	2,230	70	

○ 세부사업비

(단위: 백만원)

설치시설	사업내역	사업비	비고
배드민턴장 설치비	A=900m ²	1,930	
부대 공사비	A=100m ²	300	휴게공간, 주차장 등
설계비 등	1식	70	
계		2,30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소요예산액			
	합계	2025년	2026년	2026년 이후
계	2,300		2,300	
시비	2,300		2,300	

(3)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가) 사업개요

- 목 적: 별내역 노선 확대 및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별내지구 상업지역 활성화
- 위 치: 별내동 993번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2,672㎡ / 연면적 16,601㎡(지상6층, 지하3층)
- 사업기간: 2025. 12.~2027. 12.
- 소요예산(기부채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금액	42,227	10,000	32,227		

○ 층별 계획(안)

층 별	연 면 적	용 도	비고
지하3층	2,040.37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317대)	34대
지하2층	1,369.69		31대
지하1층	2,009.85		56대
1층	2,022.64		41대
2층	2,083.76		51대
3층	2,090.47		51대
4층	1,969.81		53대
5층	1,502.09	업무시설	
6층	1,512.55		
합 계	16,601.23		

(4)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가) 사업개요

○ 위치: 화도읍 녹촌리 산42-2번지 일원(배수지 및 진입도로), 호평동 산30-20번지 일원(가압장)

○ 사업규모

- 배수지 신설 $V=8,000\text{m}^3/\text{일}$
- 가압장 신설 $Q=16,000\text{m}^3/\text{일}$
- 진입도로 설치 $B=6\text{m}, L=92\text{m}$

○ 사업기간: 2024. 5.~2029. 5.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금액	39,249	1,428	30,721	3,300	3,800

○ 보상비 소요액

(단위: m^2 , 백만원)

구분	시설계획	취득토지면적	보상비
합계	-	13,707	3,300
녹촌배수지	배수지 신설 $V=8,000\text{m}^3$	11,922	1,914
소로	도로(소로3-100호선) $B=6\text{m}, L=92\text{m}$	545	299
신설가압장	송수가압장 신설 $Q=16,000\text{m}^3/\text{일}$	1,240	1,087

○ 취득토지 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원)	소유구분	비고
화도읍 묵현리	388-35	임야	21,700	10,956	52,400	사유지	녹춘 배수지
화도읍 녹춘리	산42-2	임야	14,301	966	60,500	사유지	
화도읍 묵현리	388-35	임야	21,700	66	52,400	사유지	진입도로
화도읍 묵현리	산192-5	임야	1,674	211	14,200	남양주시	
화도읍 녹춘리	산42-2	임야	14,301	246	4,010	사유지	
화도읍 녹춘리	산42-19	임야	118	22	42,400	남양주시	
호평동	23-27	임야	1,578	11	78,200	사유지	신설 가압장
호평동	23-51	잡종지	609	309	228,500	사유지	
호평동	23-59	임야	383	309	233,100	사유지	
호평동	산28-12	임야	2,126	210	101,600	사유지	
호평동	산30-20	도로	4,312	401	33,100	국토교통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 먼저, 호평동 멀티스포츠홀 조성 건은 호평동 33-5번지 일원의 국유지에 실내 멀티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00㎡, 연면적 1,000㎡ 규모이며 휴식공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실내체육시설 설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35억원입니다.
- 지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주민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여 공익성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향후 시설 조성에 따른 통행로 개선방안 및 시설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 다음으로 별내동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별내동 1074번지 일원(별내 근린공원 5호 부지)에 위치한 기존 실외 배드민턴장이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해당 부지를 실내 체육시설로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500㎡, 연면적 900㎡ 규모로 배드민턴장 5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 배드민턴장 설치비, 부대공사비, 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과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공공 부지의 활용도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필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별내 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 다음으로 별내특별계획구역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별내동 993번지에 위치하며, 특별계획구역2 현상설계공모 및 지구단위 계획 건축계획(안) 변경에 따라 시행사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할 주차 전용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672㎡, 연면적 16,601㎡로 지상 6층, 지하 3층으로 계획 중이며, 주차대수 317대와 상부층의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내역 노선 확대와 상업지역 개발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 마지막으로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공사 건입니다.
화도지역(녹촌·월산 지구 등)의 지속적인 개발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기존 대규모 가압시설에 의존한 고지대 급수 방식을 배수지 신설을 통해 자연유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단수 위험을 예방하고, 충분한 배수지 용량 확보를 통해 지역의 공급 안정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계통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체계 이원화를 실현하고, 화도지역의 향후 택지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북한강 야외공연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851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북한강야외공연장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법적 의무설치 대상(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청사, 공영주차장 등 공공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연장 시설 방문 시민 및 지역주민 전기차충전 서비스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한국전력공사)에게 공유재산(북한강 야외공연장) 부지를 임대하여 총 32면의 주차구획 중 2면 옆에 충전시설[급속 충전기(50kw) 2기]을 설치하도록 사용허가 하고자 함.
-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으로 충전시설을 설치·운영·유지관리 할 계획으로, 금회 안건을 상정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목 적 : 2025년 한국전력공사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추진
-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554(북한강 야외공연장 야외주차장)
- 사 업 량 : 급속 충전기(50kw) 2기 및 전력공급설비, 전주 설치
- 사업면적 : 8.13㎡ (총 부지면적 5,545㎡, 소유자 남양주시)
- 사용기간 : 2025. 12. ~ 2034. 12. 31.
- 사 용 자 :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장
- 사 용 료 : 연간 36,060원*
- * 남양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180,320원)을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80% 감면함
- 사업예산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전액 한국전력공사 부담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인 북한강 야외공연장 야외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해당 시설은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시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사용료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적용된 점 등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2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와부 및 별내지역 청소년 시설에 대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 폐쇄에 따른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내 및 와부 지역의 신규 설치 되는 청소년시설의 목록 추가 (별표 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 폐쇄에 따라 시설 목록 삭제 (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남양주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와부 및 별내 지역에 신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이 종료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와부 및 별내지역의 청소년시설 추가에 대한 사항은 타당하며,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2024년 7월 집중호우의 침수 피해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화도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와 관련하여, 대체시설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됨. 특히 화도지역은 현재 청소년 이용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 간 형평성과 청소년 복지 접근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7년 예정된 맷돌모루 플랫폼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설치 계획은 긍정적이나, 그 이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보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53
----------	-----

2025. 12. 1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 궁집 관람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민속문화유산인 ‘남양주 궁집’의 가치를 제고하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관람 제한에 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 관람시간

- 3월 ~ 10월 : 09:00~18:00 / 11월 ~ 2월 : 09:00~17:00

■ 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관람료

- 2,000원(남양주시민 1,000원) ※ 면제 규정 별도

- 대관, 대관의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규정(안 제8조~제10조)
-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에 관한 규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 궁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과 시설 대관, 대관자 준수사항 등 대관에 관한 사항 및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남양주시민 1천원, 타 지역 시민은 2천원으로 비싼 편은 아니나,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관람료에 대한 거부감 및 이용률 저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안을 통해 ‘남양주 궁집’은 남양주시민에게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전통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

시에 쉼터의 공간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남양주시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지역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25. 12. 11.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궁집의 이용률 저조 및 시민 불편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6조(관람료 부과) 규정의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나. 궁집의 상시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기반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관람료 규정을 ‘징수할 수 있다’로 완화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골자

- 가. 안 제6조(관람료 등) 제1항의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는 별표 1을 따른다”를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함.
- 나. 제8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로 수정하며,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의 명칭을 “별표”로 변경함.
- 다. 부칙의 단서 “다만, 제6조 및 제8조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8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한다.

부칙 중 “다만, 제6조 및”을 “다만,”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6조(관람료 등) ① <u>남양주 궁집의 관람료는 별표 1을 따른다.</u></p> <p>②·③ (생략)</p> <p>제8조(대관)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및 반환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6조 및 제8조</u>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6조(관람료 등) ① <u>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대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별표</u>-----.</p> <p>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8조</u>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854
----------	-----

2025. 11. 21.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5. 11. 12.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5. 1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배드민턴장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성과평가 제도 정비를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1년 연장(2026.1.1. ~ 2026.12.31.)하고자 함
 - 이용자 의견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방식 재정립 필요
 - 現 부서 자체 평가 중심 ⇒ 부서 + 전문가 합동 평가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에 객관성 강화
 - 위탁 만료에 따른 운영공백 및 시민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간 연장 추진

나. 주요내용

○ 위탁 개요

- 수탁자 :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

(최초계약일 : 2018. 1. 1. / 2년씩 총 3회 연장)

- 대상시설 :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 (14개소)
- 위탁사무 : 공공배드민턴 시설 및 운영 관리, 이용활성화 및 시민개방 운영 등

○ 기간연장 배경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탁자 연장신청 기관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성과평가 시기가 동일(계약만료 90일 전)하여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기간 확보 곤란
 - 이용자 의견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방식 재정립 필요
 - 現 부서 자체 평가 중심 ⇒ 부서 + 전문가 합동 평가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에 객관성 강화
 - 위탁 만료에 따른 운영 공백 및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간 연장 추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위탁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2025. 12. 31.) 전에 내실 있는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이용자 의견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부서 자체 평가 중심에서 부서와 전문가 합동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성과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나,

공공배드민턴장 민간위탁은 2018년 최초 계약을 시작으로 2년씩 총 3번의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고,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이번 동의안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통해 재계약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현 시점에서 계약만료일 전에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위탁공백 발생 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공백 발생 및 시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바, 추후 진행되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임시방편식의 운영이 아닌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